

May 26,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36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0. 5. 18. ~ 5. 22.)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 처리로서 “제37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법안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금감원]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2020. 5. 18.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되,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하고 우량자산은 규제를 면제·완화, ②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춰 확대하고 평가에 사용한 세부 가정 등을 공시, ③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한 법률적 불확실성 해소(특허권, 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익권을 신탁방식의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보도자료](#)



[\[참고자료\]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



[금융위]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5)안 의결

2020. 5. 18. 국제 금융중심지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의결함. 주요 내용으로 ①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을 위해 연기금의 역할 강화 및 해외투자 내실화, ② 소비자편익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외환제도 특례의 최소화, ③ 서울과 부산의 특화 전략에 따른 금융중심지 조성 지원 내실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및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의결](#)



[\[참고자료\]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금융위·기재부1]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논의

2020. 5. 20.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을 막기 위해 조성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할 방안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 ① 지원대상 요건 충족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 의견수렴 및 산업은행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에서의 지원 심의·결정, ②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취득 형태로 지원, ③ 모회사·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포괄적 금지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매일경제 보도참고\)](#)



[금융위·기재부2]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2020. 5. 20. 채권시장 불안요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 ① 매입기구 출범을 위해 산업은행이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SPV에 1조원 출자, ② 설립된 SPV의 회사채·CP 매입 규모에 맞추어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각 8조원(선순위), 1조원(후순위) 규모의 대출 실행, ③ 6개월간 운영성, 시장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PV 운영기간 연장 결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



[참고자료]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을 위한 SPV 설립 방안



[산자부·기재부·환경부·중기부]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개최

2020. 5. 20.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섬유패션산업의 위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침체된 패션의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코리아 패션 마켓’, 국방·공공부문 조기 발주, 선결제 등 확대, ② 국내 소재 사용 및 봉제를 통해 섬유패션 완제품 생산 확대(천리 프로젝트), ③ ICT융합, 개인맞춤의류, 3D 가상의를 솔루션 등 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새로운 의류 서비스 시대 출현에 선제적 대응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보도자료



[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0. 5. 19.부터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급업자의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 규정(시장의 구조,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 마련, ② 보복조치의 부당성 판단시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대리점의 신고, 조사 협조 등 행위와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 등이 있음

[참고자료]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법안\(채이배의원 등 10인\)\]](#)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은 현재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 편재되어 있음. 이에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상장회사법」을 제정함으로써, 수법자들의 법령 준수 및 검토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아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규정들을 보다 주주친화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등)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7호\)\]](#)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제 17170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10.1., 2021.1.1.)됨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과 관련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신사업 수요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시설기준 관련 규정을 개선코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4호\)\]](#)

인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가 민원 처리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가간주제를 도입. 현행 방송법 제54조의 한국방송공사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는 업무 범위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현행 방송분쟁조정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방송 송출 중단 등 시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3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 관리가 어려운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보고 관리하도록 하는 거래정보저장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고의 주체, 대상, 방법 및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증거금교환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6호)]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과 관련된 금전의 차입 및 대여를 허용하고,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간 손익을 차등하여 분배할 수 있도록 하며, 존속기간이 없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집행사원이 등록사항 변경을 보고한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7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창업 후 7년이 지난 중소기업도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8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위원 본인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원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 전념성을 강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총액, 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제378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2020. 5. 20. 제378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13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법률안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주요 법안을 소개 드립니다.

[제378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

법안명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파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외규정 도입,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정보보호인증 실시 근거 신설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회사 설립시 상호 가등기 대상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등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생산 가능 수량을 초과한 수량 또는 침해행위 이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전자문서의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공인전자문서증계자의 지정제의 인증제로의 전환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	공공기관의 효율적 데이터 연계·공동활용을 위해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민간 데이터 제공 요청 근거 신설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기관의 감사제도 폐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및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근거 신설 등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모든 전자서명에의 동등한 효력 부여,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 도입 등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지능정보서비스의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 수집, 유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의 의무 부과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프트웨어융합 활성화 근거, 소프트웨어안전화가보를 위한 시책 신설 등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교육·훈련 기관 갱신제 도입, 전문성 강화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제도 개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부과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 명시 등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탑승객에 대한 본인일치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일치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는 파기 의무화 등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비 인력 의무화, 운항규정 신고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등에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등록임대주택이 임대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할 의무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변경신고 수리 시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자의원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주체인 건설공사도급인 명확화,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사업장의 작업 중지 명령 마련 및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 시 벌칙 추가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기반 시설 외 건축물 등의 설치 추가, 국가스마트도시위원장의 공동 위촉 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양자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민간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및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규정 신설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물류단지 등이 과밀 지정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물류교통, 환경 정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기관 등의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 신설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선임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 02-316-1777

✉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